

서울특별시마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안 건 명

서울특별시마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가. 제출일자 : 2012년 11월 16일(금)

나.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3. 복지도시위원회 회부일자

2012년 11월 22일(목)

4. 개정근거

가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(법률 제10736호, 2011.5.30 시행)
제4조

나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(대통령령 제22024호, 2010.2.8시행)
제3조

5. 검토의견

0 본 조례안의 개정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안 제4조의2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하고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, 그 밖에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,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.

0 안 제4조의2 중 “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”은 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“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”으로 하고, 안 제5조제4항 중 “전임위원의 남은 기간”은 “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”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6. 관계법령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[시행 2011.5.30] [법률 제10736호, 2011.5.30, 일부개정]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.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

[시행 2010.2.8] [대통령령 제22024호, 2010.2.8, 일부개정]

제3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.

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